

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. 5. 2 선고 2024가단2010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4. 18.

판 결 선 고 2024. 5. 2.

주 문

-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4. 23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-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. 4. 23. 접수 제179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소외 D에 대한 채권

- 1) 소외 D(이하 'D'이라고만 한다)은 2019. 7. 29.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.
- 2) D은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를 연체하여 2021. 4. 23. 당시 그 연체액은 7,871,445원이었고, 2023. 12. 28. 당시에는 그 연체액이 9,368,889원이었다.

나. D의 증여

D은 2021. 4. 23.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을 증여(이하 '이 사건 증여'라 한다)하였고,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.

다. D의 무자력

이 사건 증여 당시 D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에, 소극재산으로 ①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 7,871,445원, ② E은행에 대한 채무 21,174,000원, ③ F에 대한 채무 25,082,000원, ④ G에 대한 채무 400,000원, ⑤ H조합에 대한 채무 2,500,000원 합계 57,027,445원이 있어,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채무초과상태였다.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D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,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며, D은 이 사건

증여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3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가. 주장의 요지

피고는 D이 원고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D과 사이의 자녀들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이다.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이다.

나. 판단

어떤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,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,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(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).

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피고는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, 피고가 D과 부부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용찬

별지

부동산의 표시

1. 충청북도 충주시
대 112㎡

2. 충청북도 충주시
[도로명주소]

충청북도 충주시
홍벽골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
47.37㎡

